

의안번호	2206041
의 퇴 인	이만희 의원
회 답 일	2024. 12. 24.
추 계 번호	24F5505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농어업인 등 용자 관련 등록면허세 및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
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 －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농어업인 용자 관련 등록면허세 및 조합법인 법인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할 경우, 지방세는 2026년 729억원, 2028년 826억원 등 2026년에서 2028년까지 3년간 총 2,331억원(연평균 777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6~2028년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6	2027	2028	누적	연평균
농어업인 등에 대한 용자 관련 등록면허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10조제1항)	-208	-208	-208	-624	-208
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167조)	-521	-568	-618	-1,708	-569
합 계	-729	-776	-826	-2,331	-777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조제1항 (농어업인 등에 대한 용자관련 감면 등)	○ 농어업인(영농조합법인, 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포함) 용자담보물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8.12.31.	
2	안 제167조 (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)	○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8.12.31.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10조제1항 (농어업인 등에 대한 용자관련 감면 등)	○	
2	안 제167조 (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이 2025년 중 통과될 것을 전제로 개정안의 세수효과는 2026년부터 발생할 것으로 가정
- 향후 농어업인 용자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액은 최근 5년간(2019~2023년)간 연평균액(208억원)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
- 향후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의 세수효과는 최근 5년(2019~2023년)간 감면실적 증가추세만큼 증가한다고 가정
 - 단, 세수효과는 현행 및 개정안의 총부담세액 차이를 기준으로 산출
 - 과세표준구간별 산출세액 대비 총부담세액의 비중은 2023년 수준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농어업인 용자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(안 제10조제1항)

(1) 제도 개요 및 감면실적

- (제도 개요) 상호금융기관이 농어업인에게 용자 시의 용자담보물에 대한 등기(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담보물 등록 포함)에 대한 등록면

허세 감면

- 감면액: 등록면허세의 50%
- 적용기간: 현행 2025년 12월 31일 → 개정안 2028년 12월 31일
- (감면실적) 농어업인 용자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실적은 2019년 236억원에서 2023년 130억원으로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음

[표 2] 최근 5년간 추이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19	2020	2021	2022	2023	연평균액
감면실적	236	252	260	163	130	208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년도

(2) 추계방법 및 결과

- 농어업인 용자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에 따라 2026년 208억원, 2028년 208억원 등 2026년에서 2028년까지 총 624억원(연평균 208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- 농어업인 용자담보물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최근 5년간(2019~2023년)간 감면실적의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아 연평균액(208억원)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
[표 3] 향후 농어업인 용자담보물 등록면허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감소액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6	2027	2028	누적	연평균
등록면허세 감소액	208	208	208	624	208

나.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

(1) 제도 개요 및 감면실적

- (제도 개요) 농업협동조합·수산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지

방소득세 산출시 일반법인과 달리 당기순이익 과세를 적용하여 세무조정을 간소화하고, 저율과세를 적용하는 특례

- 일반법인과 달리 조합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출시 당기순이익에서 기부금, 접대비 등 8가지 항목만을 손금불산입하고 0.9~1.2%의 저율과세 적용

[표 4] 일반법인과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 비교

구 분		일반법인	조합법인
적용대상		일반법인	농업협동조합, 수산업협동조합, 신용협동조합, 새마을금고, 중소기업협동조합, 산림조합, 염연초생산협동조합, 소비자생활협동조합
과세표준		당기순이익 + 익금산입, 손금불산입 - 손금산입, 익금불산입 =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- 이월결손금 -비과세소득-소득공제 = 과세표준	당기순이익 + 손금불산입(기부금 등 8개 항목 ¹⁾) = 과세표준
과표 구간별 세율	2억원 이하	0.9%	0.9%
	2~20억원	1.9%	
	20~200억원		1.2%
	200~3,000억원		
	3,000억원 초과	2.4%	

주: 1) 기부금, 접대비, 대손금, 대손충당금, 과다경비, 업무무관비용, 지급이자,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

□ (감면실적) 2023년 조합법인 과세특례로 인한 지방세 감면실적은 산출세액 기준 511억원으로 추정

- 법인지방소득세 감면실적은 각 연도 「조세지출예산서」의 조합법인 과세특례로 인한 법인세 감면실적에 10%를 적용한 값으로,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된 값
- 총부담세액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
- 동 조항에 따른 조세감면의 연평균 증가율은 8.9%로 나타남

[표 5] 최근 3년간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감면 실적

(단위: 억원, %)

구 분	2019	2020	2021	2022	2023	연평균 증가율
조합법인 감면실적	364	327	334	423	511	8.9

자료: 기획재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 각 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2) 추계방법

□ 조합법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조합법인의 2023년 기준 과세표준 구간별 1개 법인당 세수효과와 법인 수를 곱하여 세수효과를 추정한 후, 최근 감면실적의 증가추이를 반영하여 추정

○ 2023년 법인세 신고자료 기준 과세표준 구간별 조합법인 1개 법인당 과세표준 및 총부담세액(추정치)는 다음과 같음

－ 총부담세액은 과세표준 구간별 산출세액 실적에서 조합법인 법인세 신고내역의 과세표준 구간별 산출세액 대비 총부담세액 비중을 곱하여 추정

[표 6] 과세표준구간별 조합법인의 과세표준, 산출세액 및 총부담세액: 2023년 신고기준

과표구간별	법인수 (A, 개)	과세표준 (B, 억원)	세율 (C, %)	산출세액 (D=B×C, 억원)	총부담세액 /산출세액 (E, %)	총부담세액 (F=D×E, 억원)	1개 법인당	
							과세표준 (B/A, 억원)	총부담세액 (F/A, 억원)
합계	3,566	49,743	—	549	—	534	13.9	0.1
2억원 이하	1,157	490	0.9	4	95.6	4	0.4	0.004
2~20억원	1,819	15,321		138	93.4	129	8.4	0.1
20~200억원	572	27,432	1.2	329	98.1	323	48.0	0.6
200~3000억원	18	6,501		78	99.6	78	361.2	4.3

주: 1) 법인세 신고서 상 법인유형별 구분이 비영리 조합 등(301~313, 399)인 법인을 기준으로 집계함

2) 과세표준, 산출세액은 0원 초과 금액을 집계함

3) 총부담세액은 각사업연도소득·지점유보소득·토지등양도소득·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과 가산세,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의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임

자료: 국세청 답변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○ 2023년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로 인한 세수감소 효과는 총부담세액 기준 404억원으로 추정

－ 세수효과는 2023년 법인세 신고자료 기준 과세표준 구간별 현행 및 개정안의 1개 법인당 총부담세액의 차이와 법인 수를 반영하여 계산

[표 7] 과세표준구간별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의 세수효과: 2023년 신고기준

과표구간별	법인수 (A,개)	1개 법인당						전체 세수효과 (A×E, 억원)
		과세표준 (B, 억원)	과세특례 미적용		과세특례 적용		세수효과 (E=D-C, 억원)	
			세율 (%)	총부담세액 (C, 억원)	세율 (%)	총부담세액 (D, 억원)		
합계	3,566	13.9	－	8.7	－	5.0	－3.7	－404
2억원 이하	1,157	0.4	0.9	0.004	0.9	0.004	－	－
2~20억원	1,819	8.4	1.9	0.2		0.1	－0.1	－153
20~200억원	572	48.0		0.9	1.2	0.6	－0.3	－192
200~3000억원	18	361.2	2.1	7.6		4.3	－3.3	－59

자료: 국세청 답변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3) 추계결과

□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할 경우, 2026년 521억원, 2028년 618억원 등 2026년에서 2028년까지 3년간 총 1,708억원(연평균 569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-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에 대한 2023년 기준 추정 세수효과에 최근 감면실적의 증가 추이(8.9%)를 반영하여 추계

[표 8] 향후 농어업인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감소액 (단위: 억원)

구 분	2026	2027	2028	누적	연평균
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감소액	521	568	618	1,708	569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최천규	백경엽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천규	02-6788-4838	choi1009@assembly.go.kr